# 인천지방법원

# 판 결

사건 2023고단2997 횡령

피고인 A

검사 송윤상(기소), 조현희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이재형(국선)

판결선고 2023.8.25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유

### 범죄사실

피고인은 2018. 1. 12.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,000만 원, 다음 날인 13. 2,000만 원 합계 3,000만 원을 송금받아 WAVES 코인을 644.84WAVES 매수하고, BTC 코인을 0.94336974BTC 매수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, 2018. 1. 17. 30.00WAVES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265,697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. 2. 21.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,557,672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B 작성의 고소장
- 1. 수사보고(피의자 코인거래 내역에 대하여)
- 1. 거래내역 조회,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, 거래내역(가상화폐), 입출금거래명세서(우체국, C)

### 법령의 적용
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- 각 형법 제355조 제1항(횡령의 점). 각 징역형 선택
-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## 양형의 이유

-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개월~5년
-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[유형의 결정] 횡령·배임범죄 > 01. 횡령·배임 > [제1유형] 1억 원 미만

[특별양형인자] 없음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기본영역, 징역 4개월~1년4개월

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6월 / 집행유예 1년

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,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홍준서